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. 10. 22 선고 2023가단20465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중앙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식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차범

변론 종결2024. 10. 8.

판결 선고2024. 10. 22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2. 8. 23.경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2023. 8. 23. 마친 어선원부상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[주위적 청구취지] 주문과 같다.

[예비적 청구취지]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3. 7. 25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2023. 8. 23. 마친 어선원부상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다툼 없는 사실, 갑1, 2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, ① 원고는 2023. 11. 28. 소외 C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53,188,934원을 대위변제하고, 변제자 대위에 따라 D은행으로부터 C이 2021. 8. 24. 대출받은 대출금 반환 채권을 취득한 사실, ② C은 별지 목록 기재 선박(이하 '이 사건 선박'이라 한다)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해의 의사로 2023. 8. 23.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하고 2023. 8. 23. 어선원부상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된다.

따라서 이 선박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는바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위 어선원부상 소유권 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.

2.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3. 8.경이 아닌 2022. 7. 25.경 구두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. 7. 25.부터 2023. 5. 25.까지 E(피고의 남편 F의 형 G의 사실혼 배우자), H(F의 누나 I의 자녀로서 F의 조카)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내역(을2)를 제출하나, 시어머니인 C과 며느리인 피고의 관계, 매매대금 지급 시기도 일정하지 않고 상대방도 모두 친족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분문서인 2023. 8. 작성된 어선매매계약서(을3)의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관한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다.

나. 피고는 C에게 정당한 매매대금 합계 6,000만 원을 지급하였고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.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

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C과 피고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있는 점, ② 이 사건 선박도 C의 남편 J가 양식장 관리용 선박으로 운용하다가 그 아들인 F(피고의 남편)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, ③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, 해당 주장은 C의 일반재산인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이 추급할 수 없는 C과 피고의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했다는 것에 불과한 점, ④ C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(2023. 8. 24.) 하루 전날 이 사건 선박의 소유 명의가 C의 며느리인 피고에게로 변동된 점 등을 고려하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강지성

별지